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

노원구의회에서는 의원연구실 등의 유지관리 및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

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직종	인원	근무지	담당업무	근무일	근무시간
기간제 근로자	1명	노원구의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사 내 시설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 (본회의장, 의원연구실, 상임위원회실 등) 사무국 및 의원들의 업무 보조(자료배부) (각 회의장 음료·다과류 준비 및 물품관리) 우편물 수령 및 방문객 안내 업무 등 	월 ~ 금 (공무원 근무일에 준함)	9:00 ~ 18:00 (8시간)

2. 응시자격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민원안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친절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

3. 근무조건

- 채용기간
 - 2026. 6. 26. ~ 2027. 6. 25.(12개월)
 - ※ 고득점자순으로 채용
- 보수액 : 월2,533,290원 (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, 세금 원천징수)
 - ※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 반영
-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 준용

4.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6. 2.(화) ~ 6. 5.(금), 9:00~18:00
 - ※ 점심시간 제외(12:00~13:00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※우편·팩스·인터넷 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
- 접수장소 : 노원구의회사무국 의정팀(노원구청 본관 8층, ☎02-2116-3383)

5. 채용방법 및 일정

- 채용방법 :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
- 시험일정
 - 1차 서류전형 발표 : 2026. 6. 10.(수),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 - 2차 면접심사 : 2026. 6. 15.(월) 15:00 노원구의회 사무국 8층 소회의실
 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6. 18.(목), 합격자에 한 해 유선 개별 통보

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(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)
- 결격사유부존재 서약서 1부.
-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- 봉사활동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7. 기타사항

- 위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 서류상의 허위,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(30일)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이메일(minoen00@nowon.go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7월 2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해당 기간 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노원구의회사무국 의정팀(☎02-2116-3383)으로 문의 바랍니다.